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법제도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 근로기준법 제 6장 '안전과 보건' 10개 조항 규정 이 신설
-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틀 마련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및 체계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 구조도

제·개정권자					법적성격
국민투표	기본법(헌법)				법령 (형사처벌 및 경제력 제재 병행)
국회 <small>[합노위 → 법사위 → 본회의]</small>	산업안전보건법(법률)				
대통령 <small>[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smal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고용노동부장관 <small>[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small>	고용노동부령(3개)				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고시, 예규, 훈령				

고용감독(고용노동부)



기술지원(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기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특수건강 진단기관	작업환경 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	-------------	--------	-----------	-----------	------------

법체계상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계층		효력성질	처벌	심의	제개정
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형사 처벌	국회 법사위	국회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규명령		법제처	대통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고시, 예규, 훈령		행정명령	경제적 제제 (과태료)	노동부 법무관 실	노동부 장관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표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 6장 감독과 명령

제 6장-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 8장 보칙

제 9장 벌칙

- 제 1장 총칙
- 제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3장 안전보건교육**
- 제 4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 **제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1절 도급의 제한
 -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법의 보호대상 범위

KBS1

취재파일

법의 사각지대 청소년 특수고용직

김재량 영등포경찰서 경찰

WEEKLY ISSUE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일방과실이라 할지라도 노동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이 가능했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제외

대상사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 제현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 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소매업 (2016.2.17 개정 : 2016.8.18 시행)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삭제(2016.2.17 개정 : 2016.8.18 시행) 아.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자. 녹음시설운영업 차. 방송업 카.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 자. 연구개발업 타.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마. 협회 및 단체 바.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 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돌 이 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제외 사업과 규정] - 시행령 별표 1

별표1 제4호와 제5호의 사업	적용제외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 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 함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 치](제9항제외)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31조의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 [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 [준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제외 사업과 규정] - 시행령 별표 1

별표1 제6호의 사업	적용제외규정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 [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 [준용]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의2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 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급의 금지와 안전보건조치 -1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로 도급할 수 있기에 사실상 도급 자체를 금지하지 않음.

현재(18' 11월 기준) 도금, 중금속 및 허가물질 제조 사용작업 인가 사업장 : **도급인 기준 19개소, 수급인 기준 25개소임.**

개정내용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대한 도급금지 : **1. 도금작업 2.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3.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취급사업장**
→ 약 6,065개소로 추정
(도금작업 2,995개소/수은 등 중금속 제련.가공사업장 1,497개소,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사업장 1,738개소-에 법적용 추정)

• 의미와 한계

-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사업장의 도급금지(키워드 : '**취급물질**')
- 예외적용 허용 : 일시.간헐적 작업 및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도급일 경우
-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수리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업무는 비 포함**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화학물질의 경우 최대한 넓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작업 등으로 확대 (갱내 작업, 야간 작업 포함도 제기)

녹산·밀양공단 노동자 납중독 직업병 발병!! 고용노동부는

주물작업 노동자의 납중독발병에 대한 조사

2017년 12월 27일

녹산 노동 / 부산을



OfmyNews

도금이 크지와 아저버거주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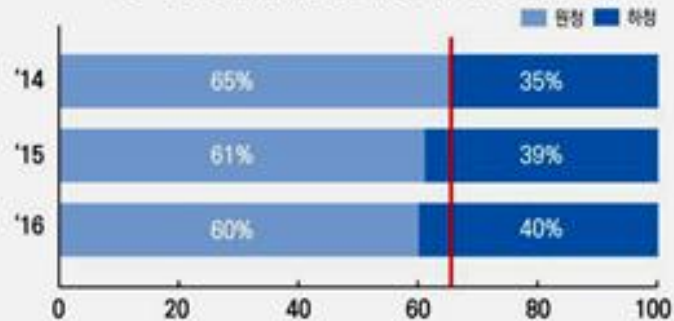
증가하는 산재 사망자와 '위험의 외주화'

자료 : 이윤옥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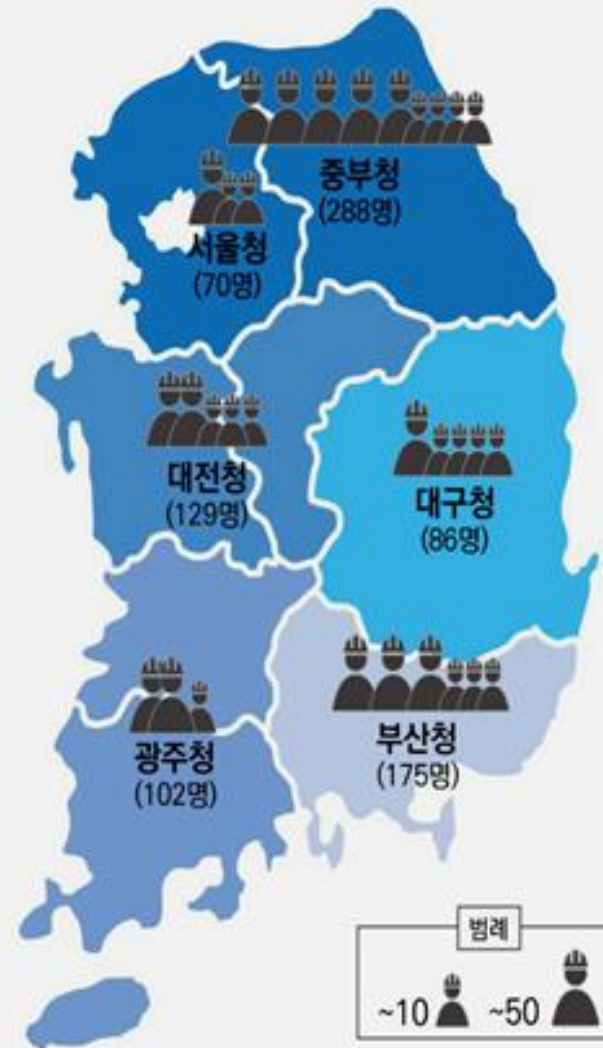
년도별 중대재해 발생 사망자 현황 (원/하청)



년도별 중대재해 발생 사망자 비율 (원/하청)



2016년 전국 산재 사망자 현황 (지방청별)



현행

'도급인(원청).수급인(하청)노동자가 같이 작업을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에서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있었음.

개정내용

도급 및 도급인과 발주자의 개념 명확히 함.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책임처벌의 강화(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상향/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향)

• 의미와 한계

- **도급인(원청), 발주자의 책임성 강화가 확대됨**
- **3월 하위법령(시행령)**에서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개입이 필요함.
- 노동부 법 해설서는 "**22개 위험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함. 문제제기와 확대 요구가 필요함.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위험작업 거부권 - 작업중지권

Kilsh.or.kr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안전, 건강을 위협받을때
일을 중단, 대피, 업무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STOP

작업중지권!

일터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험에서
노동자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그러나 본능적인 위험에 대한 회피와 거부가
억압당하는 현장의 현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복원해야 합니다.

STOP

함께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17년 5월부터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 ☞ 일터의 다양한 유해위험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행된
작업중지 현황 취합과 모니터링
- ☞ 작업중지로 인한 사측의 불이익에 맞선 공동 대응과 연대
- ☞ 산안법 26조의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등

현장에서 작업중지를 진행중이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면 함께 대응합니다.

laborr@jinbo.net, 카카오톡 ID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31-247-8633

현행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내용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

제26조(작업중지 등)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내용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2~5항 생략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의미와 한계**

- 여전히 노동자대표의 작업중지권한이 없음
- 작업중지 지속과 해제 요건 강화 필요
- 전면 작업중지 대상을 규정, 중대재해 발생시 동종 유사 작업/작업중지 명령 해체 절차 행사 권한의 축소 가능성 있음.
-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반영이 필요함.

현행

현행 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과정에서의 재해예방 조치에 집중되어있기에 설계시 안전시설 검토나 안전한 작업방법 검토가 미비함.

발주자가 공사계획.설계.시공 등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개정내용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발주자도 산재예방조치토록 명시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하여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규정함

- 계획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토록 하고, 납품 시 확인
- 시공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여부 확인

• 의미와 한계

- 전반적인 건설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의 책임 부과
- 법 시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
- 처벌 강화필요(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 개정 내용 이해 2-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현행

산안법 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설치.해체 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자격.면허를 가진 노동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함.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체팀의 등록기준이 없음(영세한 비전문업체 난립 : 130개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없음.

개정내용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 위반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신설>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신설로 건설공사도급인의 타워크레인 등 건설 기계.구에 대한 안전조치 부과

• 의미와 한계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건설기계 사고 원청 책임을 타워크레인은 본법에 규정하고, 나머지 건설기계는 시행령으로 위임.
- 건설기계 27개 기종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필요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대상화학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 : 정부 파악 및 노동자가 필요 시 제공받기가 어려웠음.
물질정보에 대한 '영업비밀'을 이유로 중요한 물질에 대하여 비공개가 많았음(영업비밀 적용비율 '09 45.5% → '14 67.4%증가)

개정내용

— 물질정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비공개 시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비공개 심사는 안전보건공단 위탁)
물질정보는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이 아니라 제품명으로 기재

• 의미와 한계

- 정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관리 및 조치 용이
- 사업주의 '영업비밀' 남발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
- 물질정보 제출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 문제
- 최초안의 물질정보에 대한 온라인상 공개조항은 삭제됨.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현행 제26조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2018년 4월 17일 신설된 조항(10월 18일 시행)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 의
근로자
인간
주요
신체
정신
건강
장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개정안에 제4조(정부의 책무)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으로 신설됨.(6개월이후 시행)
 -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산재법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다. 신설

산안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근기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한계

- 노동자의 참여권 확대 중요
 -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자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으로 들어가야 함.
 - 노동자의 '참여' 확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포괄 : 산보위 구성, 명산관 활동시간 및 내용, 노동부나 정부의 역할 등 명시 필요
- 법 적용 확대
- 기업의 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 확대
 - 최근 10년간('07~'16) 법위반 사건 중 유기징역 비율 0.5%
 - '16년 발생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 : 432만원
 - ➔ (미국) 아진USA(현대차협력사) 사망사고 시 약 30억원 벌금 부과
 - ➔ 시설물안전관리법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언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를 기억합시다.
- 우리가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찾기와 주체 조직에 함께합시다.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곧 가족과 시민의 안전임을 생각합시다.
- 전체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건강권 만들기로 확장합시다.
- 3월 하위법령 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합시다.



